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 시상식 운영 대행」 과업지시서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 시상식 운영 대행」 과업지시서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 시상식 운영 대행
2. 과업목적
 - 서울모델리스트콘테스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행사 전문 대행사를 선정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상식 개최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7. 9. 8
4. 소요예산 : 금 일천오백구십팔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II 과업 내용 및 범위

1. 과업범위 : 시상식장 조성 및 운영
2. 과업내용

가. 시상식장 조성

- 1) 시상식 기획 및 연출
- 2) 시상식장 포토존 및 출력물, 음향, 케이터링 등 기타 집기 배치 및 운영
- 3) 기타 전기선 물딩작업 등 시상식장 구성 및 철거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시상식 운영

- 1) 수상자 확인, 안내요원 등 현장 진행인력 투입 및 운영
- 2) 행사 스케치(영상/사진촬영)
- 3) 기타 원활한 시상식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소속 패션산업팀
담당자 천윤영 선임
전화 02-2088-3147
팩스 -
발주기관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www.seouldesign.or.kr

III 과업수행 절차

1. 착수계 제출

가. 시기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나. 내용 : 과업 추진계획(현장운영계획), 참여인력 및 조직체계도, 예산산출내역, 세부일정계획

2. 단계별 보고

가. 착수보고 : 착수계로 같음

나. 중간보고 : 착수보고 이후 시상식 전 행사 운영보고

다. 수시보고 : 협의사항, 긴급 변경사항 등

라. 결과보고 : 시상식 종료 후 행사 운영결과 보고

3. 용역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결과보고서 : 행사 운영결과 기록한 백서 형태의 결과보고서

나. 행사장 스케치(촬영) 자료 일체

IV 과업 추진 유의사항

1.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용역대가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운영, 기타 소요비용 일체로 하되, 계약체결 후 '사업자'의 신청 시 선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과업수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후 잔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 '사업자'는 사업비를 재단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재단에게 납부해야 한다.

2. 기타 과업 추진 시 준수사항

- 본 과업은 계약서,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 책임자 및 담당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 상호 협의 하에 교체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주기적으로 과업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진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 재단의 출석, 자료제출 및 현장 확인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계획 등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계약을 중도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해 협력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업체의 책임 하에 선정하여 발주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력업체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발주처가 감독권을 갖는다.
- 모든 계획은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의 승인은 문서로 하고 과업관련 제작물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주요 내용은 문서로 한다.
- 본 과업지시와 관련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
-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본 시방서에 제시한 조건에 미달 또는 위배한 경우
-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초 제안서 제출시 업체 소개내용, 참여인력 경력, 사업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한다.

나.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발주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 선지급분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계약해지 조치가 진행되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끝.